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식별표지의 발급 또는 이를 갈음하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